

남원시 고시 제2017-120호

**남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입법예고**

「남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09월 일

남 원 시 장

- 가. 자치법규명 : 남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나. 입법예고 기간 : 2017.9.27. ~ 2017.10.17. (20일간)
- 다. 예고방법 :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재
- 라. 예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남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7. 9.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건강생활과장

1. 제정이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및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정신건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남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남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
 - 인력, 업무, 운영비 지원 및 비용의 부담 등
- 나. 남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운영
 - 위탁 기관 및 선정방법,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에 관한 사항
- 다.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운영
 - 위원회 구성 및 기능, 회의 운영 등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지역보건법」
-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 간 : 2017. 9 . 27 . ~ 2017. 10 . 17 . (20일간)
 - 결 과 :
 -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예방·치료, 재활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친화적 환경조성과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정신건강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남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며 위치는 남원시 관내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을 통하여 주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

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2장 관리 운영

제4조(설치 및 운영) ① 센터는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인력) ① 시장은 정신건강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센터에 정신건강의학전문, 정신건강전문요원, 그 밖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근무가 어려울 경우 자문의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된다.

제6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신건강 관련 자원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2. 지역 내 정신건강사업 기획 및 자원조정
3. 정신건강사업 계획 수립

- 4. 정신질환자의 발견·등록 및 의뢰 등 연계구축 사업
- 5.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치료연계 및 재활
- 6.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의 지원
- 7. 정신질환 예방 및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 8. 정신질환 편견해소 홍보,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
- 9. 보건·복지인력에 대한 정신건강 교육·훈련 및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자문
- 10. 지역주민 자살예방사업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
- 11. 지역사회 자원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봉사
-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사업

제7조(운영비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감염병 환자
-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사람
- 3. 그 밖에 시설이용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가능 우려가 있는 사람

제9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 시장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비의 경감·보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비용의 부담) 시장은 법 제79조에 따라 제44조에 따른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① 「의료급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부담하는 비용(이하 “자기부담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자기 부담금을 지원 받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3장 위탁운영

제11조(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제12조(위탁자의 선정) ①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까지 공고하여야 하고 30일 이내 선정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기간) 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14조(협약체결)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는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1. 위·수탁자와 그 관련사항
2. 위·수탁 기간 및 시설
3. 수탁자의 권리·의무와 준수사항
4. 협약위반 시 조치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간

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의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사무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손해배상) 수탁자 또는 이용자는 시설 및 비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장 남원시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제19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정신건강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원 등 기간 연장의 심사청구

2. 퇴원 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 청구
3. 입원기간 연장의 심사
4.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명령에 대한 심사
5.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2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의 경우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
4.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재활을 위하여 노력한 정신질환자의 가족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 가. 정신건강증진시설 설치·운영자
 -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심리학·간호학·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다.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회복한 사람

라. 그 밖에 정신건강업무 관계 공무원, 인권전문가, 정신건강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2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제2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회의) ① 위원회는 심의 또는 심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 또는 심사 사항이 없는 달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정신건강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위원회의 업무 중 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안에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부위원장이 되고, 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심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0조제3항제1호,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각각 1명 이상, 같은 항 제5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6조(정신건강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입원 등 기간의 연장과 퇴원 등 처우개선의 심사에서 그 사람의 입원 등을 결정하였던 위원과 그 사람의 입원 등을 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위원은 제척된다.

② 입원 등 기간의 연장, 퇴원 등 처우개선의 심사를 청구한 사람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7조(간사) ① 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

신건강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28조(보고) 위원회 위원장은 그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의견청취 등) 각 위원회 위원장은 심사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기관 및 관계자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수당 등) 시장은 각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협조사항) 읍·면·동장은 정신질환자 파악 및 등록 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3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남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원시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남원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 · 운영 조례안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남원시 고시 제2017 - 121호

남원시 군도 8호선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남원시 군도 8호선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09 월 29 일

남 원 시 장 인

1.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 치	면 적 (㎡)	기 점	종 점	주 요 통과지	총연장 (km)
변경	군도	8	장교~인풍	남원시 운봉읍, 아영면 일원	-	운봉읍 장교리	아영면 인풍리	임리마을	13.4

2. 도로구역 결정 사유

- 관내 비법정 도로에 대하여 도로구역을 결정(변경)·고시하여 도로정비 및 사업 계획수립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사업시행기간 : 2017년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 칙”

5. 도로구역 결정(안)도 및 지형도면고시도 : “게재생략”

6.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등), 토지 및 지장물조서, 소유권 및 자금계획, 도로구역 결정 조서 등의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 ~ 2017. 10. 31

나. 열람장소 : 남원시청 건설과(☎063-620-6526)

7. 도로구역 결정 조서 : “계재 생략”

8. 도로구역 결정도 및 지형도면고시도 : “계재 생략”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군도8호선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토지소유자	
	읍·면	리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합 계					4,078	3,525		
1	아영	인풍	473-2	도	622	622	국(건설부)	
2	아영	인풍	474-3	도	13	13	배*현	
3	아영	인풍	474-4	도	8	8	남원군	
4	아영	인풍	457-2	도	36	36	양*영 외 2인	
5	아영	인풍	491-6	도	662	662	국(건설부)	
6	아영	인풍	497-3	도	7	7	박*규	
7	아영	인풍	531-15	도	4	4	국(건설부)	
8	아영	인풍	611-1	도	797	797	국(건설부)	
9	아영	인풍	675-1	도	1,256	1,256	국(건설부)	
10	아영	인풍	산61-6	도	73	73	국(건설부)	
11	아영	인풍	0-4	도	600	47		

남원시 고시 제2017-123호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고시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09월 일

남 원 시 장

1. 명 칭 :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2. 취지와 목적 :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방안 마련
3. 주요내용
 - 가. 협의회명 :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 나. 구성기관 : 2017년 9월 현재, 87개 지방자치단체
 - 다. 구성형태
 - 의장도시, 부의장도시, 감사도시로 임원 구성
 - 의장도시에 사무국 설치
 - 연 1회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소집과 의결
4. 고시방법 : 시보 및 남원시청 홈페이지

붙임 :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1부. 끝.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17. 9. .

제출자: 남원시장

제안설명자: 보건소장

1. 제안이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해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정책 발굴, 프로젝트 평가, 회원도시간 교류 및 정보 공유체계 구축,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홍보 등 협의회 사업(안 제3조)

나. 협의회 구성(안 제4조)

※ 2017년 4월 현재 87개 지방자치단체 참여: 붙임 별표 참고

다. 의장 도시, 부의장 도시, 감사 도시로 임원 구성(안 제10조)

라.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개최와 의결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제17조)

마. 협의회 운영 사항에 대해 협의·결정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안 제18조)

바. 협의회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

(안 제25조~제27조)

사. 세입·세출 예산 의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안 제2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자치법」 제152조부터 제158조까지

나. 예산조치: 2017년 예산편성(회비 2,000,000원)

다. 전문: 별첨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① 본 협의회는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칭하며 국제적·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의 건강 도시들을 대표한다.

② 영문표기는 Korea Healthy Cities Partnership(약칭 KHCP)으로 한다.

제2조(목적) 협의회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가장 높은 수준의 건강증진 및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정부(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도시”라 한다) 간 공공 정책과 정보를 공유하며, 평화로운 도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노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정책 발굴 및 추진
2. 건강도시 프로젝트 평가 사업
3. 회원 간 교류 지원 및 정보 공유체계 구축
4. 회원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5. 건강도시 홍보사업
6. 그 밖에 협의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2 장 회 원

제4조(구성 및 자격) 협의회는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정회원: 제2조의 목적에 동의하고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단체로서 협의회 의 인증을 받은 자치단체
2. 준회원: 정부기관, 협력대학 및 연구소, 비정부기구(NGOs), 국제기구, 민간부문 /기업 등

제5조(가입절차) ①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도시 및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23조에 따른 협의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 사무국은 가입 신청서를 접수하여 제4조에 정한 자격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준회원의 경우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정회원 신청 도시는 제2항의 통지를 받고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다.

제6조(권리) 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협의회 회원으로서 권한과 편익을 향유할 권리
2. 협의회 운영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총회·각종 회의의 투표권 및 의결권
3. 규약에 따라 선출되는 직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4. 협의회 사업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② 준회원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투표권 및 의결권과 제3호에 따른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외하고 정회원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7조(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2. 규약 및 규정을 준수할 의무
3. 회비를 성실히 납부할 의무
4.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회원 상호간 협력의 의무

제8조(포상) 협의회 의장은 협의회 발전 또는 건강도시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자격 상실) ① 협의회 회원은 탈퇴서를 사무국에 제출함으로써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② 협의회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총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1. 개인 및 사기업의 영리활동에 이용하는 등의 행위로 협의회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2.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③ 운영위원회는 협의회 회원으로서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납입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사무국은 회원 자격의 상실에 관하여 해당 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구성 및 임기) ① 임원은 의장도시, 부의장도시, 감사도시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임원은 해당 자치단체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의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겸한다.

④ 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임기 만료로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제11조(의장도시 선출) 의장도시는 정기총회 개최 6개월 전 희망도시를 공모하여 운영 위원회에서 추천하며,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2조(부의장도시 및 감사도시 선출) ① 부의장도시는 의장도시가 지명한다.

② 감사도시는 2개 도시로 두며, 정기총회에서 다득표 순으로 2개 도시를 선출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 업무 및 회계 상황에 대한 감사
2. 총회와 운영위원회에 감사결과의 보고
3. 의장에게 감사 결과에 관한 의견 제시
4. 부정·부당한 행위의 시정 요구

제 4 장 총 회

제14조(구성) 총회는 제4조에서 정한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5조(회의)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 개최지는 정기총회에서 결정하며, 개최 도시는 총회를 주관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9월중에 개최한다. 다만, 국내·외 여건에 따라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개최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재적회원 4분의 1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소집의 이유와 부의 사항을 제시하여 협의회에 요구한 경우

3.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협의회에 요구한 경우

제16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의장이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업계획 또는 세입·세출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에 관한 사항
5. 운영위원회에서 제출된 사항 및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사항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총회의 성립과 의결)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는 해당 자치단체장이 참석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소속기관의 해당 부서장 이상에게 위임하여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총회 개최 전까지 의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모든 회원은 총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 5 장 운영위원회

제18조(구성 및 임기) ① 운영위원회에는 11개 도시 이내의 정회원과 다수의 준회원을 두며, 이는 의장도시에서 지명한다.

② 의장도시와 부의장도시는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결정한다.

1. 협의회의 목적과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2. 정보의 교류와 축적에 관한 사항
3.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에서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20조(운영위원회의 성립과 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운영위원회에는 해당 자치단체장이 참석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위원은 소속기관의 부단체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21조(실무협의회) ①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운영위원회의 실무자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검토
2. 주요 사업의 예산 편성 및 시행 검토
3. 회원 상호 간 정책 공유 및 협의
4.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사전검토 등

제 6 장 기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22조(기타 위원회의 설치) ① 협의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별, 사업 영역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발전과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학술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7 장 사무국

제23조(사무국 설치) ① 협의회는 업무 처리를 위하여 의장도시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국장은 협의회 의장이 임명하며, 사무국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의장도시에 사무보조원 1인을 채용할 수 있고, 보수 총액은 행정자치부의 기간제근로자에 관한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 8 장 재 정

제24조(회계연도) 협의회는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5조(재원) 협의회는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연회비 및 기타 수입금(이하 “회비

등”이라 한다)으로 충당한다.

제26조(회비 등) ① 회비 등은 협의회 은행 계좌로 수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장은 회비 등 재정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③ 연회비는 회계연도 개시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고지하고, 그 납부 기일은 매년 2월 말일로 한다.

제27조(세입) 협의회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연회비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1. 정회원 연회비는 광역 자치단체 300만원, 기초 자치단체 200만원으로 하며, 준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2. 기타 수입금은 보조금, 기부금, 후원금, 출연금 등으로 한다.

제28조(세출) ① 다음 사항은 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하여 지출한다.

1. 협의회 회의와 관련된 비용

2. 그 밖에 협의회 운영(교육, 훈련, 세미나, 워크숍, 컨퍼런스와 같은 본래 사업과 협의회 목적과 목표 달성을 위하여 운영하거나 실행하는데 사용)에 필요한 경비

② 의장도시는 연간 300만원 이내에서 활동비를 지출할 수 있다.

제29조(예산 및 결산) ① 세입·세출 예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의결한다.

② 의장도시는 회계연도마다 재정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다음 해 최초 임시총회에서 보고한다.

③ 감사도시는 의장도시가 제출한 재정보고서를 검토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다음 해 최초 운영위원회 및 임시총회에서 보고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는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약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회원도시 현황

■ 정회원(87개 도시)

【2017. 4월 기준】

시·도명	자치단체명	비고
서울 (22)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봉구, 성동구, 성북구, 동작구, 중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송파구, 구로구, 종로구, 강동구, 중랑구, 용산구, 관악구, 동대문구, 강서구, 양천구, 금천구, 강북구, 서초구	
부산 (4)	부산진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장군	
대구 (1)	수성구	
인천 (3)	인천광역시, 연수구, 남구	
광주 (3)	동구, 서구, 남구	
대전 (1)	유성구	
울산 (1)	울산광역시	
세종 (1)	세종특별자치시	
경기 (11)	화성시, 부천시, 광명시, 의왕시, 양평군, 시흥시, 수원시, 안성시, 용인시, 고양시, 오산시	
강원 (3)	원주시, 양구군, 속초시	
충북 (4)	제천시, 진천군, 보은군, 충주시	
충남 (7)	금산군, 서산시, 부여군, 천안시, 당진시, 아산시, 논산시	
전북 (5)	무주군, 장수군, 진안군, 군산시, 남원시	
전남 (4)	장흥군, 완도군, 순천시, 광양시	
경북 (9)	안동시, 구미시, 고령군, 경산시, 포항시, 상주시, 울진군, 경주시, 군위군	
경남 (7)	남해군, 진주시, 창원시, 양산시, 하동군, 통영시, 거창군	
제주 (1)	제주특별자치도	

■ 준회원(10개 기관): 연세대학교 의료복지연구소 건강도시연구센터,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건강증진연구센터, 순천향대학교 건강도시 및 건강영향평가연구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건양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건강도시연구센터, 경남대학교 건강향노화센터,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건강증진연구팀

남원시 공고 제2017-129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전 열람공고

남원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 전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같은법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 원 시 장

2017년 9월 29일

1. 사업의 종류 : 남원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2. 사업의 명칭 및 시행지의 위치, 사업의 규모

사업명	위치	시설명	등급	노선번호	사업구간	사업량	착수일		비고
							시행청	준공예정일	
네마실1길 소로 개설공사	남원시 향교동	도로	소로	1-17	향교동 267-2~ 향교동 125-7	L=269m B=12.8~ 20.5m	2017. 10 2018. 4	남원시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명 : 남원시장
 - 나. 주소 :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5. 열람기간 : 도보게재 익일부터 14일간
6. 열람장소 : 남원시청 도시과(063-620-6463)
7. 관계 도서는 남원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끝.

남원시 공고 제2017 - 1321호

남원예촌 문화마당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남원예촌 문화마당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2조 및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31」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7일

남 원 시 장

1. 제정이유

남원예촌 문화마당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남원예촌 문화마당의 활성화 및 남원 관광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5조 남원예촌 문화마당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정

- 1) 효율적 운영을 위한 다양한 운영방안 기준 마련
 - 직영, 위탁관리, 사용수익허가의 운영형태 가능
- 2) 사용수익허가 사용료의 설정
 -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 연 1천분의 10 설정

나. 제6조, 제7조, 제8조 문화마당 내 시설물 등의 이용 기준 제정

- 1) 문화마당의 목적에 맞는 활용 유도

· 문화예술, 도시재생, 전통체험, 관광홍보 등의 활동 및 지원

2) 문화마당 활성화를 위한 이용료 산정

· 오전/오후/야간 구분 산정(별표1) : 회당 10,000원

· 이용료 전액 면제 기준 제정 : 공공목적, 도시재생 등

다.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위탁운영 기준 제정

1) 수탁자 선정 기준 제정

2) 세부 운영에 대한 협약체결 후 공증절차 이행

3) 수탁자의 의무, 민형사상 책임, 지도감독, 위탁의 취소 기준 마련

라. 제17조 기념관 운영을 위한 기증품 관리 기준 제정

1) 기증물품의 기증·교부·관리 기준 마련

3. 의견제출

○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17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 518) 남원시청 관광과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20-6746) 및 직접방문 등

4. 기타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관광과(☎063-620-61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예촌 문화마당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예촌 문화마당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남원예촌 문화마당(이하 “문화마당”이라 한다)은 남원시 광한북로 20(쌍교동)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문화마당”이란 남원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남원예촌 지구를 말한다.
- 2. “시설물 등”이란 문화마당 내 위치한 각종 건물 및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제4조(별칭사용) 문화마당의 홍보와 대중적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각의 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5조(관리·운영) ① 문화마당 내 시설물 등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운영 한다. 단 문화마당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수익허가 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하거나 위탁 운영할 경우 사용기간 및 사용료 산정 등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단 사용·수익허가의 사용료는 재산평정가액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한다.

제6조(이용범위) 문화마당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및 지원사업
2.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행사
3. 전통체험 및 여가 활동과 지원사업
4. 지역특산품 판매홍보와 지원사업
5. 지역 홍보 및 관광정보 제공
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이용신청) ① 문화마당 내 시설물 등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일 7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용허가 여부를 접수일 부터 3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설이용 신청자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서 이를 허가한다. 다만, 시장 또는 위탁운영자가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이용료 등) ① 문화마당 내 시설물 등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 할 경우
2. 남원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경우
3.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행사를 개최할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9조(행위의 제한) 시장은 건전한 분위기 조성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경우
2. 시설물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위험물을 소지한 경우
4. 혐오 및 유해동물과 함께하는 등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시설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0조(수탁자 선정) 시장은 문화마당의 공공성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협약체결) 시장은 수탁자와 협약을 문서로서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수탁자 의무 및 행위제한)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등과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
2. 수탁사무의 처리 및 시설물과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할 의무
3. 각종 사고발생에 따른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가입 의무
4. 수탁시설에 대한 일상적인 유지·보수 의무, 단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대규모의 수리·보수는 시장이 직접 시행한다.

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탁재산을 양도나 다시 빌려주는 행위
2. 위탁재산을 담보에 제공하는 행위
3. 시장의 승인 없이 위탁재산을 변형하거나 추가하는 행위와 사용목적은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제13조(운영지원)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범위에서 문화마당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민·형사상 책임) ① 수탁자 또는 제3자가 시설물과 재산을 파손, 분실하였을 경우 수탁자는 변상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자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사건·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③ 시장은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받거나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 손해배상과 관련된 비용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사무의 처리 및 수탁재산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회계검사를 포함한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거나 제2항의 감사 및 평가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른 의무 및 행위제한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시설물을 관리·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거나 기능을 못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이유로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은 문서를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기증) ① 문화마당에 소장품을 기증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기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수락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② 시장은 소장품을 기증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마당의 전시·소장품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대장에 기록하여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관리법」,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7조 관련)

남원시 남원예촌 문화마당 이용허가(변경) 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연 락 처	
	대표자 성명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또는 소재지			
행 사 명		내 용		
일 시	일 자	20 . . . (요일)		횟 수 오전() 오후() 야간()
	시 간			
사 용 대 상				
감 면 사 유 또는 특기사항				
그 밖에 사항		행사계획서() 행사안내서() 전시 작품 목록() ※ 별도 붙임 제출		
<p>「남원예촌 문화마당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 . .</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p> <p>남원시장 귀하</p>				

[별표 1]

이 용 료 (제8조제1항 관련)

시 설 명	이 용 시 간	이 용 료	비 고
• 문화마당 부지 전체 또는 일부	오전 : 08:00~12:00	10,000원	- 1회는 오전, 오후, 야간 중 어느 하나를 말함. - 사용시간은 준비, 철거, 정리시간 모두 포함
	오후 : 13:00~17:00	10,000원	
	야간 : 18:00~22:00	10,000원	

[별지 제2호 서식]

소 장 품 기 증 서 (제17조 관련)

명 칭	수 량	규 격	비 고

본인 소유의 위 소장품을 남원시 남원예촌 문화마당에 기증(양도)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기증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연 락 전 화 :

남 원 시 장 귀 하

[별지 제3호 서식]

소 장 품 기 증 확 인 서(제17조 관련)

기 증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기증품 목록

명 칭	수 량	규 격	비 고

귀하 소유의 소장품을 남원시 남원예촌 문화마당에서 정히
기증(양도)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직인)

[별지 제4호 서식]

전시 및 소장 물품대장(제17조 관련)

명 칭		수 량		국적/시대	
기 증 자		작가명		제작연도	
물품번호	입수일자		연 유	가 격	
	재 질				
	규 격				
	특 징				
(사진)					
명 칭		수 량		국적/시대	
기 증 자		작가명		제작연도	
물품번호	입수일자		연 유	가 격	
	재 질				
	규 격				
	특 징				
(사진)					

남원시 공고 제2017 - 1332호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정이유

-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훈수당 인상 및 지원 대상자 확대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원대상 확대 (안 제3조제1항)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배우자, 유족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 전몰군경·순직군경의 유족 중 1명에 한정
 - 전상군경·공상군경중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한 전상군경·공상군경의 배우자로서 국가보훈처의 보훈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
 -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유족으로서 국가보훈처의 보훈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

○ 지급 제외대상 삭제 (안 제3조제2항)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의 보훈급여를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을 받는 사람

○ 지원금액 조정 (안 제3조제3항)

- 국가유공자 : 5만원 → 6만원
- 배우자, 유족 : 5만원

3. 입법예고기간 : 2017. 9. 30. ~ 2017. 10. 23. (23일간)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2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 063-620-6210)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예촌 문화마당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2. 제출자	성명(명칭)	
	주소	
3. 의견		
4. 기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2017. 9.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주민복지과장

1. 개정이유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훈수당 인상 및 지원 대상자 확대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확대 (안 제3조제1항)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배우자, 유족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 전몰군경·순직군경의 유족 중 1명에 한정
- 전상군경·공상군경중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한 전상군경·공상군경의 배우자로서 국가보훈처의 보훈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
-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유족으로서 국가보훈처의 보훈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

나. 지급 제외대상 삭제 (안 제3조제2항)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의 보훈급여를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을 받는 사람

다. 지원금액 조정 (안 제3조제3항)

- 국가유공자 : 5만원 → 6만원
- 배우자, 유족 : 5만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7. 9. 30. ~ 2017. 10. 23.(23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붙임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의뢰 중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사람”을 “참전유공자(사망한 경우 배우자 포함)”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무공수훈자(사망한 경우 배우자 포함)

제3조제1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전몰군경·순직군경의 유족 1명(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선순위 유족 1명에 한정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공상군경 중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한 전상군경·공상군경의 배우자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지 않는 사람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유족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지 않는 사람(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선순위 유족 1명에 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가보훈청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월”을 “국가유공자는 월 6만원,

그 유족에게는 월”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람이”를 “국가유공자가”로, “지급 한다.(단, 배우자는 제외한다.)”를 “지급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 ① 남 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 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대상자로 한다.</p> <p>1. 「<u>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u>」 제2조제2 호에 해당하는 <u>사람</u></p> <p>2. 「<u>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u>」 제4조제1항 제4호 및 제6호, 제7호(사망한 경우, 배우자포함), 제9호에 해당하는 <u>사람</u></p> <p><신 설></p> <p><신 설></p>	<p>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 ① -- ----- ----- -----.</p> <p>1. ----- ----- ----- <u>참전유공자(사 망한 경우 배우자 포함)</u></p> <p>2. 「<u>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u>」 제4조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u>무공수훈자 (사망한 경우 배우자 포함)</u></p> <p>3. 「<u>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u>」 제4조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u>전몰군경·순직군경의 유족 1 명(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선순 위 유족 1명에 한정한다.)</u></p> <p>4. 「<u>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u>」 제4조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u>전상군경·공상군경 중 상이 등급 7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한 전상군경·공상군경의</u></p>

<신 설>

② 다음 각 호의 대상자는 지급에서 제외한다.

1.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의 보훈급여를 받는 사람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을 받는 사람

3.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청장이 제외자로 통보한 사람

③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

배우자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지 않는 사람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유족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지 않는 사람(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선순위 유족 1명에 한정한다.)

② -----
-----.

<삭 제>

<삭 제>

3. -----

----- 국가보훈처장 -----

③ -----

복되지 않게 지급하되, 월 5만원으로 한다.

④ 제3항의 수당을 받는 사람이 사망할 경우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 한다.(단, 배우자는 제외한다.)

⑤ 제3항의 수당을 받는 사람에게 생일축하금 5만원을 지급한다.

----- 국가유공자는 월 6만원, 그 유족에게는 월 --.

④ ----- 국가유공자가 -----
- 지급한다.

⑤ ----- 국가유공자-----
-.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조례」 개정에 따른 수당지급 예산

○ 관련조문

-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조례」 제3조제3항

2. 비용 추계결과

○ 연간예산 : 850,680천원

- 국가유공자 : 60,000원 × 774명 × 12개월 = 557,280천원

- 유족 : 50,000원 × 489명 × 12개월 = 293,400천원

○ 연도별 예산

- 2018년 : 850,680천원

- 2019년 : 808,146천원

- 2020년 : 767,738천원

※고령으로 인한 지원 대상자 자연 감소로 연간 5% 감액 예상

3. 재원 조달 방안

○ 재원조달계획 : 도비보조금 20%, 자체세입 80%

○ 연도별 재원조달계획

- 2018년 : 850,680천원(도비 170,136천원, 시비 680,544천원)

- 2019년 : 808,146천원(도비 161,629천원, 시비 646,517천원)

- 2020년 : 767,738천원(도비 153,548천원, 시비 614,190천원)

4. 그 밖의 사항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 입	850,680	808,146	767,738	729,350	689,882	3,845,796	
국 비	0	0	0	0	0	0	
도 비	170,136	161,629	153,548	145,870	135,576	766,759	
시 비	680,544	646,517	614,190	583,480	554,306	3,079,037	
자체수입(입장료)	0	0	0	0	0	0	
기타수입	0	0	0	0	0	0	
세 출	850,680	808,146	767,738	729,350	689,882	3,845,796	
보훈수당	850,680	808,146	767,738	729,350	689,882	3,845,796	
						0	
						0	
						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850,680	808,146	767,738	729,350	689,882	3,845,796
	국비	0	0	0	0	0	0
	도비	170,136	161,629	153,548	145,870	135,576	766,759
	시비	680,544	646,517	614,190	583,480	554,306	3,079,037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입장료수입						
	기타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남원시 공고 제2017-1334호

남원시 시내지역 및 치안취약지역 마을방범용 CCTV 추가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범죄예방 및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내지역 및 치안취약지역 마을방범용 CCTV 추가설치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09. 29.

남 원 시 장

1. 설치목적 :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2. 설치장소 : 9개소
3. 행정예고기간 : 2017. 09. 29. ~ 10. 19.(20일간)
4. 설치예정지

순번	읍면동	CCTV 설치위치(지번)	설치대수	비 고
1	보절면	보절면 금다리 146-6 외 1	2	
2	이백면	이백면 척문리 432-4 외 1	2	
3	동충동	용성로 135-14	2	
4	죽향동	하정2길 15 외 1	2	
5	노암동	술미길 3-1 외 1	2	
6	금동	농원길 160 외 1	2	
7	왕정동	왕정동 599	2	
8	향교동	구암길 71	2	
9	도통동	도통동 625	2	

5. 관련근거법규

-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나.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라.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원시 총무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과 그 이유)
-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 다. 의견 제출기간 : 2017. 09. 29. ~ 10. 19.(20일간)
- 라. 문의 및 의견제출
 - 1) 우편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총무과
 - 2) 전화 - ☎ 063-620-6069
 - 3) 팩스 - ☎ 063-620-6704
- 마.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첨부 1】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사 업 명	남원시 시내지역 및 치안취약지역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설치예정 장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시내지역 및 치안취약지역 마을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